

위와 같이 양 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5월 15 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원장 김영준



한국저작권위원회
위원장 임원선



「콘텐츠 산업 및 저작권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한」

업무 협약서

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저작권위원회(이하 ‘양기관’이라 한다)는 콘텐츠 및 저작권 거래 불공정 행위 예방, 피해 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콘텐츠 및 저작권 거래 불공정행위 예방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상호협력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콘텐츠 및 저작권 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건에 대한 피해 구제 처리
2. 문화산업 법령,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협의회 운영
3. 콘텐츠 및 저작권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
4. 장르별 콘텐츠 및 저작권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및 연구
5. 기타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

제3조(협의회 운영) ①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장 또는 실무자로 구성된 콘텐츠 및 저작권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운영한다.

② 협의회는 제2조 각호의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4조(비밀 유지)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기타사항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협약 당사자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②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 기관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